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2. 5 선고 2020나537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

담당변호사 배은서

피고,항소인 1. C

2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

담당변호사 김철웅

변론 종결 2020. 11. 27

판결선 고 2021. 2. 5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2. 17. 선고 2019가단5020422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,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1. 제1심 공동피고 A(이하 'A'이라고만 한다)과 피고 C 사이에 2018. 7. 12.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4,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A과 피고 D 사이에 2018. 7. 13.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며, A과 피고 C 사이에 2018. 7. 13.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에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 C은,가. 원고에게 4,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나. A에게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8. 8. 3.접수 제26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피고 D는 A에게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8. 7. 27. 접수 제106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[항소취지]

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당심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.

◎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내지 제11행의 "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"을 "위 각매매계약"으로,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"피고 C이"를 "L가"로 각 고쳐 쓴다.

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병룡 판사 이순형 판사 김정민

별지